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940-10

공공형어린이집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목 차

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개요 ····· 2

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재선정 ····· 4

Ⅲ.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 29

Ⅳ.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37

Ⅴ.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 42

부 록

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 48

2.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서식 ····· 51

3. 공공형어린이집 결산양식(예시) ····· 78

4. 공공형어린이집 공무원용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 79

5.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용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 90

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사용매뉴얼(공무원용) ····· 94

2020년 선정 및 운영기준 주요 개정 사항

▣ 선정 기준 변경

○ 참여 기본요건 변경(신규선정)

– 정원충족률 지역별 조정 범위 추가

구분	기존	개정안
참여 기본요건 (신규선정)	○ 정원충족률 –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x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 유지. 농어촌 지역 50.00% 이상 유지 *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 가능 – 정·현원은 종일반·맞춤반·합반(종일반+맞춤반) 아동 기준	○ 정원충족률 –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충족률(현원/정원x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 유지. 농어촌 지역 50.00% 이상 유지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 가능 *지역별로 ±5% 이내로 조정 가능 – 정·현원은 기본보육 아동을 기준으로 함

○ 세부 선정기준 변경(신규 및 재선정)

– (신규선정)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점수 배정 조정(10점→5점)

– (신규, 재선정) 맞벌이 자녀 재원율(5점→삭제)

– (신규, 재선정)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 여부(5점)

– (신규선정)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여부(5점)

– (재선정) 품질관리사업 희망참여 이수 여부(2점),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여부(자율)

구분	기존	개정안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신규선정)	○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10점) – 우수형 지정 (10점) – 지방자치단체형 지정 (5점)	○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5점) – 열린어린이집 지정 (5점)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신규선정, 재선정)	○ 맞벌이 자녀 재원율(5점) – 50% 이상(농어촌 40% 이상)(5점) – 30% ~ 50% 미만(농어촌 30%~40% 미만) (3점)	〈삭 제〉

구분		기존	개정안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신규 선정, 재선정	○ (신설)	○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5점)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5점) –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3점) –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1점) * 판단시점 : 신규선정 공고일, 재선정 심사일 기준 다만, 재선정 심사일이 '20.6월 이전인 경우 조건부 통과(3개월내 준수)
	신규 선정	○ (신설)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 여부(5점)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모두 기준 이상 지출하는 경우(5점)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하나라도 기준 미만 지출하는 경우(2점) * 급식·간식재료비 기준(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 확인방법: 최근 6개월간 '영·유아 1인당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단가' 대비 '영·유아 1인당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기준 이상 지출 여부 확인 * 지자체 지원 급식·간식재료비 미포함
지역별 자율평가 (재선정)	필수	○ (신설)	○ (재)선정 이후 품질관리사업 희망참여 1회 이상 이수 여부(2점)
	자율	○ (신설)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 여부 * 급식·간식재료비 산출 산식은 신규선정 기준 참고

▣ 운영 기준 변경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관련 기준 변경

구분	기존	개정안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 평일 07:30~19:30까지 의무 운영 (아동이 하원한 경우에도 19:30까지 당직교사 등을 배치) – 지역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 불가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 평일 07:30~19:30까지 운영(기본보육, 연장보육 운영), 19시30분까지 연장보육교사 배치가 원칙임,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보육을 미운영하거나 단축 운영은 불가 – 〈삭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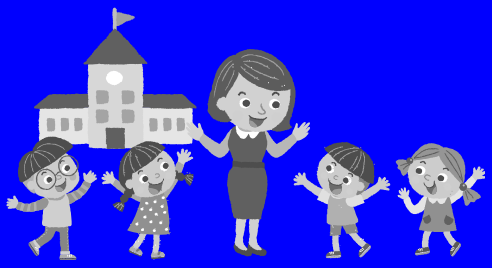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개요

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재선정

Ⅲ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Ⅳ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Ⅴ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I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개요

1 공공형어린이집이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3 2020년 사업계획

• 운영 : 전체 2,400개소 내외 운영 예정

* 상세 선정 및 운영계획은 시·도별로 수립 후 시행

상세 선정요건 및 절차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내용 참고

4 업무체계

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운영계획 수립**
- (재)선정 요건 개발, 사업안내 및 업무매뉴얼 제작

○ **품질관리 총괄 등**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관련 컨설팅 및 재무회계 교육
-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공모전 개최
- 공공형어린이집 관계기관 관리(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및 품질관리 사업 운영 지원

○ **통계 관리(선정 및 재선정, 유지, 취소(자체 포기 포함) 현황 등)**

나 시·도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운영계획에 따라 세부 선정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심사 및 (재)선정(전산관리 포함)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점검 진행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포기 및 취소 처리(전산관리 포함)

○ **시·도 內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및 현판 제작·배부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품질관리 컨설팅, 원장연수, 교사연수 등) 협조

다 시·군·구

○ **시·도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 및 집행**
-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요건 확인 및 선정기관 추천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급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점검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포기 및 취소 사유 통보(지정서 및 현판 폐기)

○ **시·군·구 內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품질관리 컨설팅, 원장연수, 교사연수 등) 협조

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재선정

* 사업내용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2020년 신규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나 참여 기본요건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차·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선정 공고일 이후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충족률 산정기간은 각 시·도별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 가능
* 지역별로 ±5% 이내로 조정 가능(단, 이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은 50% 이상 적용)
* 농어촌 지역이란, 농어촌 지역 및 농어촌 특례 지역 모두 포함

- 정·현원은 기본보육 아동을 기준으로 함
  * 연장보육, 야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아동 제외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 예시) 총 정원 80인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5명) 운영 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20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20년 2월 정·현원 현황의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대체 가능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반별 정원 탄력편성,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등

다 제외 대상 어린이집

아래 내용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외 대상 기준이며, 각 시·도별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추가할 수 있음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⑥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⑦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6~7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박스 참고)

행정처분 범위 중 6~7번 관련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후 ('14.6) **'보육료에 대한 부정행위'를 처분하기 위해** 근거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존처럼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 부정유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외 대상으로 적용

(예시)

(1) 교사나 아동 허위등록, 출석일수 조작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처분 받은 경우 : 신규, 재선정 제외 및 선정취소대상

(2) **보육료나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신규, 재선정 제외 및 선정취소 대상

* 지출증빙서류 미비, 예산과목 적용오류 등으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처분을 의미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 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선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사유로 봄)

* 50인 미만 시설도 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놀이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

• 공동놀이실 :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

•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 최근 한 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 자료로 확인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대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

○ **(필수조건)** 놀이터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지자체 담당자 현장확인 필수

○ **(놀이터 종류)** 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 옥외, 옥내놀이터 면적 기준 : 21인 × 45% × 3.5㎡(33.07㎡)
  * 정원이 40~49인 어린이집에서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아래항목을 충족한 경우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2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평정결과가 우수한 수준(3점)
    - 3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의 1, 2문항(1-3-1, 1-3-2)에서 Y를 받은 경우
    - 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평가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요청
- 인근놀이터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의 인정기준 증빙자료* 제출확인(2020년 보육사업안내 p.47)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고정식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유효기간 내의 설치검사필증만 인정

○ **(지자체 시스템 정보변경 절차)**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前 놀이터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업무여건에 따라 수기로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현장 확인 이후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선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행정지원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최소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판단 기준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중 2/3 이상 채용한 경우 인정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원장에 대해서만 적용
  - 설치·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인 어린이집**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산정 시점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 100

  * 융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담보설정)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함.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비 외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모두 합한 액수로 산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 정보공시 여부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 단, 보육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대체교사도 담임교사인 경우 포함)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보며, 복직 후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토록 함 단, 육아휴직증명서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및 평가표에는 이수 예정자로 체크하도록 함

미이수자 범위

•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이듬해까지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 '1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19년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17년 이후 직무교육 이수자는 '20년 말까지 보수교육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별도 서류제출 없음

○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라 세부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의 원칙**

- 1순위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이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공공형어린이집 / 전체어린이집 수) × 100

- 2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3순위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 4순위 : 선정권자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1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 **건물 소유 형태**

- 판단시점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 소유여부 : 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자가로 인정

- 이용여부 :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공동주택(건축법 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內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전용으로 취급 (주택유형은 건축물대장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필요)

  *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은 15점 부여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 판단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전 3년

  (예 공고일이 '20년도 5월인 경우 '17년도 5월부터 '20년도 4월까지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포함(법인 및 법인·단체등 대표자 변경은 제외)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 판단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 현판 또는 지정서로 지정 여부 확인

○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 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 배점기준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5점),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3점),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1점)

* 연장반을 미운영하는 경우에도 1점 부여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전 6개월

(예 공고일이 '20년도 5월인 경우, '19년도 11월부터 '20년도 4월까지임)

* 판단시점 내에 연도 전환되는 경우, 각 연도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가 해당 연도의 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

– 배점기준: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모두 기준 이상 지출하는 경우(5점),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하나라도 기준 미만 지출하는 경우(2점)

*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20년)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19년) 영아 1,745원, 유아 2,000원

* 지자체 지원 급식·간식재료비 미포함

– 확인방법: 최근 6개월간 '영·유아 1인당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단가' 대비 '영·유아 1인당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기준 이상 지출 여부 확인

– 계산식

최근 6개월간 영·유아 1인당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단가	최근 6개월간 영·유아 1인당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
최근 6개월 {(영아 현원 평균 × 1,900) + (유아 현원 평균 × 2,500)} ÷ 총 현원 평균	최근 6개월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평균액 ÷ 해당기간 총 현원 평균 ÷ 평균 보육일 수

주의 해당 기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금액에서 지자체 지원 급식·간식재료비 제외

* 2020년부터 '급식비'가 '급식·간식재료비'로 변경됨

* 현원은 보육통합시스템 월말 재적인원(기본보육) 기준 적용

예시 공고일이 '20년도 7월인 경우,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 여부 확인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 평균
영아 현원	9명	9명	8명	8명	9명	9명	8.7명
유아 현원	30명	30명	25명	25명	25명	24명	26.5명
총 현원	39명	39명	33명	33명	34명	33명	35.2명
보육일수	20일	20일	22일	21일	20일	22일	20.8일
실제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액	2,050,000원	1,750,000원	2,150,000원	2,050,000원	1,750,000원	1,900,000원	1,941,667원

구분	계산식	산출금액
최근 6개월간 영·유아 1인당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단가	최근 6개월 {(영아 현원 평균 × 1,900) + (유아 현원 평균 × 2,500)} ÷ 총 현원 평균 ↓ (8.7명×1,900원)+(26.5명×2,500원) ÷ 35.2명	2,352원
최근 6개월간 영·유아 1인당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금액	최근 6개월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평균액 ÷ 해당기간 총 현원 평균 ÷ 평균 보육일 수 ↓ 1,941,667원 ÷ 35.2명 ÷ 20.8일	2,652원

* 현원 및 보육일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해당 예시는 최근 6개월간 영·유아 1인당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단가(2,352원)보다 최근 6개월간 영·유아 1인당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금액(2,652원)이 더 많으므로,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모두 기준 이상 지출하는 경우(5점)에 해당함

2 보육교직원 전문성

보육교사 공통 적용기준

- 기본보육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제외)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정교사 및 특수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1급 비율, 관련학과, 근속 보육교사 비율에 포함
- 대체교사의 경우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산정 시 포함

○ **1급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1급 보육교사 자격 인정 기준일 : 지자체에서 호봉산정, 임면보고 시 사용하는 기준일과 동일

(예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수료하고, 이에 필요한 근무연한을 모두 만족시켰을지라도,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 후 발급받지 않은 경우 1급 보육교사로 인정 안됨)

* 자격증 신청 후 자격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신청일 전일 포함 14일 이내 교사 변동 내역이 있는 경우 변동 내역 이전 교사 기준으로 산정

– 계산식 =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1급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참고 * **보수교육 대상 및 1급 보육교사 비율 산정 방법**

교사	등급	직위	비고	교사 수 산입	보수교육 대상
A	1급	만 1세반 담임	–	○	○
B	1급	만 2세반 담임	출산 휴가	○	×
C	2급	만 3세반 담임	–	○	○
D	2급	만 4세반 담임	육아 휴직	○	×
E	3급	만 5세반 담임	–	○	○
F	1급	연장보육 전담교사	–	×	×
G	2급	방과후 보육교사	–	×	×

☞ 1급 보육교사 비율 = [2명(1급 보육교사 수)/5명(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 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전문학사 학위 이상 자격 인정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 계산식 =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 소지 보육교사 수) / (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해 전문 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원장의 전문성**

– 판단시점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 개월 수 및 일수 반올림 불가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교사 경력이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2020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또는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②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유치원 원장 경력이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2020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③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현 어린이집에 임용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속연수를 산정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6개월간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월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산정

* 출산·육아휴직의 경우, 대체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

* 월 지급액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포함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 탄력편성 수당은 미포함

*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후 교사를 동일 교사로 간주하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며 동 기간 중 반이 폐지 또는 증가되어 6개월간 평균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을 산정

* '20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1호봉 월 1,911,70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

※ **계산식 : [(15 × a) +(12 × b) + (9 × c) +(6 × d)+(3× e)+(0× f)]/N,**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91만원 이상	15점	a
188.5만원 이상~191만원 미만	12점	b
186만원 이상~188.5만원 미만	9점	c
183.5만원 이상~186만원 미만	6점	d
180만원 이상~183.5만원 미만	3점	e
180만원 미만	0점	f
계		N

예시 담임교사가 7명인 시설의 경우 해당 반에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 평균
'가' 교사	191만원	191만원	191만원	191만원	191만원	191만원	1,910,000원
'나' 교사	189만원	189만원	189만원	189만원	189만원	189만원	1,890,000원
'다' 교사	186만원	186만원	186만원	186만원	186만원	186만원	1,860,000원
'라' 교사	184만원	184만원	184만원	184만원	184만원	184만원	1,840,000원
'마' 교사	185만원	185만원	185만원	185만원	185만원	185만원	1,850,000원
'바' 교사	181만원	181만원	181만원	181만원	181만원	181만원	1,810,000원
'사' 교사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0,000원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91만원 이상	15점	1
188.5만원 이상~191만원 미만	12점	1
186만원 이상~188.5만원 미만	9점	1
183.5만원 이상~186만원 미만	6점	2
180만원 이상~183.5만원 미만	3점	2
180만원 미만	0점	0
계		7

⇒ 계산 : [(15점 × 1명) + (12점 × 1명) + (9점 × 1명)+(6점× 2명)+(3점× 2명)+(0점× 0명)] / 7명 = 7.71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 계산식

• 3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 2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2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 대체교사로 근무하다 담임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의 경우 휴직 전후의 기간을 연속한 근무 기간으로 간주
단, 퇴직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예 '17년 3월 1일~'19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19년 3월 1일~4월 30일까지 2개월간 휴직 후 '20년 3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17년 3월 1일~'20년 3월 31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간주하되, 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총 근속기간은 35개월로 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3 지역별 자율 평가

○ (필수)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대상 : 장애아, 야간연장, 휴일보육

– 판단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일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보육통합시스템 내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여부 확인 등)

* 단, 야간연장어린이집 등으로 지정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취약보육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음

○ (필수)시간제보육 운영 여부

– 대상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 판단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일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시간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1개반 기준)인 경우에 해당함.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어린이집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필수 지표 외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예시

-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공보육 취약지역
-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시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 건강주치의제 실시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석면검사 의무 실시대상 : 430㎡ 이상)
- 정부 시범사업 등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등
- 급식·환경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상단의 지표는 예시이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추가 발굴 및 수정적용 가능

2 선정절차

가 선정방법

○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선정 및 지원**
- 시·군·구간 어린이집 종류 및 규모별 균형 있는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 시·도별로 선정심사단을 구성하여 자체 선정

나 선정절차

○ **선정공고(시·도)**
- 각 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신청접수(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지자체별로 선정요건 부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요건 1차 확인(시·군·구)**
- 신청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을 1차 선정 후 시·도로 추천
- 선정요건 부합 특히,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여부는 현장 확인

○ **선정기관 추천(시·군·구)**
- 시·군·구별로 정해진 물량의 1.5배~2배수 내의 어린이집을 추천, 사전에 정해진 물량 없이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중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추천
- 시·도로 추천 시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별 우선 순위 목록 및 신청 어린이집별 심사표 업로드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시·도)**

– 시·도별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 선정 시에는 시·도별로 선정심사단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최종 선정 시 당초 물량의 110%를 선정, 추가 10%는 예비 선정 대상자*로 관리, 다만 예비 선정 대상자는 선정자 발표 시에는 발표하지 않음

* 예비 선정 대상자 활용 : 공공형 후보로 선정된 시설이 최종심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추가공고 없이 예비 선정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예비 선정 대상자는 해당 차수에 한해 유효)

– 선정 후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시·도의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함께 공고

– 시·도는 최종 확정된 명단을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서면보고

선정심사단 구성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선정심사단 대체 가능

• 선정심사단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가, 보육교사, 부모,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보육교사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과 관계없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에서 추천

• 시·도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활용 시에도 이미 위원으로 위촉된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는 제외

○ **선정확정(시·도)**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확정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함

행정사항 예시

• 5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6월 중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확정된 경우는 6월 30일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확정하여 7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정서 및 현판 배부**

– 시·도는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정서 및 현판을 발급하여 시·군·구로 배부

3 2020년 재선정 기준

가 재선정 기준 개요

○ **(재선정 기준) 필수항목 + 운영항목**

– **(통과 기준)** 필수항목(11항목, 25점)을 모두 충족하고 운영항목(9항목, 75점)은 항목별 배점 합산으로 산정

– **(통과 점수)** 필수항목과 운영항목의 배점 합산 결과 총점 75.0점 이상일 경우 통과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검토 후 조건부 통과가능 (조건부 통과 이후 지자체에서 충족여부 확인 후 미충족 시 취소절차 진행)

(예시1) 필수항목 모두 충족(25점) + 운영항목(55점) = 80점(재선정 통과)
(예시2) 필수항목 모두 충족(25점) + 운영항목(40점) = 65점(재선정 미통과)
(예시3) 필수항목 1개 미충족 + 운영항목(75점) = 재선정 미통과

나 재선정 대상

➔ (재)선정 4년차 공공형어린이집

– '14년, '17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운영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호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전에 재선정여부 결정

– 미통과 할 경우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됨을 통지

* 어린이집에서도 재원아동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추가보육료 발생 등)을 안내하도록 조치

다 재선정 제외 대상

○ 재선정 공고일 현재, 미운영 어린이집(현원 0명, 휴지 중인 어린이집 등)

○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

* 단, 쟁송 중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는 재선정 대상에 포함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의무교육 미참여, 안전공제회 미가입, 재선정 포기 어린이집

라 재선정 통과 기준

○ **필수항목(11항목, 25점)을 모두 충족하고 운영항목(9항목, 75점)별 배점 합산으로 산정, 필수항목과 운영항목의 총점이 75.0점 이상이면 재선정 통과**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검토 후 조건부 통과가능 (조건부 통과 이후 지자체에서 충족여부 확인 후 미충족 시 취소절차 진행)

○ **지자체 심사과정에서 추가요건 적용가능**

* 관련 서식 수정 또는 추가도 가능

마 2020년 재선정 기준

구 분	필수항목(11항목, 25점)	운영항목(9항목, 75점)
통과기준	준수 여부로 판단 (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미통과)	항목별 배점(점수)의 합산으로 판단
안정적인 기관운영	•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 정원충족률 • 행정처분 이력 •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전문적인 보육교직원 관리	•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준수여부	• 1급 보육교사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 • 원장의 전문성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 및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 – 원장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 원장 재직경력이 현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인 경우 • 담임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 준수 •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교사
수요자 맞춤형보육	• 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 정보공시 • 열린어린이집 운영여부	•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 지역별 자율 평가
영유아 안심보육	• 설치기준 – 놀이터 안전검사 현황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현황	–

바 재선정 기준 - 필수항목 세부내용

○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 재선정 심사일 현재,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2차·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00점[1] 이상인 어린이집

1)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 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심사 월에 평가 결과가 발표예정인 경우 조건부 심의 후 등급에 따라 최종결정
* 평가결과 기준미달로 인한 공공형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쟁송 중인 경우 : 해당 쟁송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라면 재선정 심사대상에 포함하되 쟁송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취소 절차 진행

○ **정원충족률**

– 최근 1년간[1] 어린이집별 정원충족률이 지역별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이상인 어린이집

1) 재선정 대상으로 통보 받은 날이 속한 월의 전월부터 1년간

– 정원충족률 기준은 지역별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에서 ±5% 이내로 조정 가능 (단, 이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은 50% 이상 적용)

예시 A지역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 77% ⇒ 72~82% 사이에서 설정 가능

* 지역 : 시·도 또는 시·군·구(행정구 포함) 단위로 적용가능
* 실제기록과 시스템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출석부 등으로 확인가능

– 정·현원은 기본보육 아동을 기준으로 함

– 기타 정원충족률 관련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결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공공형 선정 이후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 처벌이 진행 중인 경우**는 재선정 심사대상에 포함(추후 확정된 경우 취소절차 진행)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⑥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⑦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6~7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박스 참고)

⑧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2번 이상 부과 받은 경우

예시 영유아보육법 과태료 2번, 영유아보육법 과태료 1번 + 청소년성보호법 과태료 1번

행정처분 범위 중 6~7번 관련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후 ('14.6) **'보육료에 대한 부정행위'를 처분하기 위해** 근거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존처럼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 부정유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외대상으로 적용

예시

(1) 교사나 아동 허위등록, 출석일수 조작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 받은 경우 : 신규, 재선정 제외 및 선정취소 대상

(2) **보육료나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신규, 재선정 제외 및 선정취소대상

* 지출증빙서류 미비, 예산과목 적용오류 등으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최근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현재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제외 대상임

– 대표자, 원장,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공공형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 **공공형 선정 이후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원장에 대해서만 적용

○ **최근 6개월 평균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 100

* 융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함.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은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산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

– 판단시점 : 재선정 심사일 현재

–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 단, 보육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대체교사도 담임교사인 경우 포함)

미이수자 범위

•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이듬해까지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 '1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19년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17년 이후 직무교육 이수자는 '20년 말까지 보수교육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별도 서류제출 없음

○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최소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 판단 기준 : 재선정 심사월 전월부터 3개월 중 2/3이상 채용한 경우 인정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공공형 선정 이후 부모로부터 '보육료 추가수납 금지' 의무 준수여부 확인

* 공공형 선정과 동시에 시스템 상 추가보육료 생성은 제한되나,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추가수납한 정황이 2개월 이상 발견된 경우 재선정에서 제외

* 필요 시 이용아동 부모에게 확인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에 대해 충실히 공개한 어린이집**

– 판단시점 : 재선정 심사일 현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 인가담당부서 협조를 통해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 (시정명령 이력, 조치결과 등)

– 시정명령 이력은 공공형 취소나 재선정 탈락대상은 아님. 다만, 해당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현재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

– 50인 미만 시설도 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놀이실[1]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2]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

1) 공동놀이실 :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

2)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 최근 한 달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자료로 확인

50인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

○ **(필수조건)** 놀이터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지자체 담당자 현장확인 필수

○ **(놀이터 종류)** 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 옥외, 옥내놀이터 면적 기준 : 21인 × 45% × 3.5㎡(33.07㎡)
  * 정원이 40~49인 어린이집에서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아래항목을 충족한 경우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2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평정결과가 우수한 수준(3점)
    – 3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의 1, 2문항(1-3-1, 1-3-2)에서 Y를 받은 경우
    – 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평가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요청

• 인근놀이터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의 인정기준 증빙자료* 제출확인(2020년 보육사업안내 p.48)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고정식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유효기간 내의 설치검사필증만 인정

○ **(지자체 시스템 정보변경 절차)**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前 놀이터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업무여건에 따라 수기로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현장 확인 이후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 재선정 심사일 기준으로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판단

사 재선정 기준 – 운영항목 세부내용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유무**
  – 판단시점 : 재선정 심사월 전월 말일로부터 전 3년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
  – 판단시점 : 재선정 심사일 현재

○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 여부**
  – 판단시점 : 재선정 심사일 현재
    * 단, 심사일이 '20.6월 이전인 경우 조건부 통과(3개월 내 준수)
  – 배점기준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5점),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3점),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1점)
    * 연장반을 미운영하는 경우에도 1점 부여

보육교사 공통 적용기준

- 기본보육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제외)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정교사 및 특수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1급 비율, 관련학과, 근속 보육교사 비율에 포함
- 대체교사의 경우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산정 시 포함

○ **1급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재선정 심사일 현재

* 1급 보육교사 자격 인정 기준일 : 지자체에서 호봉산정, 임면보고 시 사용하는 기준일과 동일

(예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수료하고, 이에 필요한 근무연한을 모두 만족시켰을지라도,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 후 발급받지 않은 경우 1급 보육교사로 인정 안됨)

* 자격증 신청 후 자격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재선정 심사일 포함 14일 이내 교사 변동 내역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 이전 교사 기준으로 산정

– 계산식 =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1급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

참고 *

보수교육 대상 및 1급 보육교사 비율 산정 방법

교사	등급	직위	비고	교사 수 산입	보수교육 대상
A	1급	만 1세반 담임	–	○	○
B	1급	만 2세반 담임	출산 휴가	○	×
C	2급	만 3세반 담임	–	○	○
D	2급	만 4세반 담임	육아 휴직	○	×
E	3급	만 5세반 담임	–	○	○
F	1급	연장보육 전담교사	–	×	×
G	2급	방과 후 보육교사	–	×	×

* 1급 보육교사 비율 = [2명(1급 보육교사 수)/5명(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재선정 심사일 현재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또는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 계산식 =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수) / (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원장의 전문성**

– 판단시점 : 재선정 심사일 현재

– 개월 수 및 일수 반올림 불가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교사 경력이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2020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또는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②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유치원 원장 경력이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2020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③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현 어린이집 임용시점부터 현재까지 근속연수를 산정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판단기간 : 공공형 선정(직전 재선정) 이후

* 차등 지급의 경우 참여유예기간을 두어 '20년부터 확인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이상 지급

– 차등 지급의 경우 최소 국공립 1호봉 간 금액* 이상 지급

* 월 급여 1,952,500원(2호봉) - 1,911,700원(1호봉) = 40,800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1호봉 월급여액	1,621,800원	1,702,800원	1,856,000원	1,911,700원
차등 지급 확인	×	×	×	○
금액 기준	×	기준 없음	최소 39,600원 이상	최소 40,800원 이상

• ('17년) 어린이집 회계연도에 따라 3월부터 당해 연도 1호봉 지급

• ('18년~'19년) 1월부터 당해 연도 1호봉 지급

• ('20년) 1월부터 당해 연도 1호봉 이상 지급하고, 보육교사 경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휴직의 경우, 대체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 확인

* 월 지급액('20년 기준 1,911,700원 이상)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및 4대 보험료 중 교사 본인부담분 포함(사업자 부담분은 교사급여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부담)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정은 월 지급액 기준(보육사업안내 참고)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 탄력편성 수당은 별도

– 어린이집에서는 공공형 선정(직전 재선정) 이후 급여지급대장, 월급명세서 등 급여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제출

*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되는 경우 재선정에서 제외

○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재선정 심사일 현재

– 계산식

• 3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 2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2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 대체교사로 근무하다 정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의 경우 휴직 전후의 기간을 연속한 근무 기간으로 간주 단, 퇴직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예 '17년 3월 1일~'19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19년 3월 1일~4월 30일까지 2개월간 휴직 후 '20년 3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17년 3월 1일~'20년 3월 31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간주하되, 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총 근속기간은 35개월로 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

– (필수)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대상 : 장애아, 야간연장, 휴일보육

• 기간 : 재선정 심사월 전월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일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보육통합시스템 내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여부 확인 등)

* 단, 야간연장어린이집 등으로 지정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취약보육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음

– (필수)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

• 대상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 기간 : 재선정 심사월 전월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일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시간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1개반 기준)인 경우에 해당함.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어린이집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필수) 공공형품질관리사업 희망참여 1회 이상 이수 여부

• 대상 : 원장 및 교사

• 기간 : 공공형 선정(직전 재선정) 이후 3년

* 공공형어린이집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 등으로 확인

필수 지표 외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예시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 여부

* 급식·간식재료비 산출 산식은 신규선정 기준 참고(10~11쪽)

•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공보육 취약지역

•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시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 건강주치의제 실시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석면검사 의무 실시대상 : 430㎡ 이상)

• 정부 시범사업 등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등

• 급식·환경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상단의 지표는 예시이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추가 발굴 및 수정적용 가능

Ⅲ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조건에 해당

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가 유효기간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나 운영기준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및 점수가 A등급,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평가 지표: A등급 유지
- 제3차 평가인증 지표(통합지표) : A등급 유지
- 2차 및 3차 지표 시범사업 : 90.00점 이상 유지
  *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 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 85.00점 이상 유지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학부모 및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야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이후 부모부담보육료를 미수납하는 대신 회계연도 중간에 필요경비를 인상하여 추가 수납 불가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의 지자체별 수납한도액 준수**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대상 : 담임교사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선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월 급여를 낮출 수 없음(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표 참고)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1,911,700원) 기준을 준용

  * 월 지급액('20년 기준 1,911,700원 이상)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 4대 보험료 중 교사 본인부담분 포함(단, 사업자 부담분은 교사급여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부담)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정은 월 지급액 기준(보육사업안내 참고)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 탄력편성 수당은 별도

-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하여, 매년 1월부터 당해 연도 지급기준 적용

○ **열린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적보고

ex) 연1회('20.3~'21.2)/ 반기('20.3~8/'20.9~'21.2)/ 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개방성
  - (공간요건) 모든 보육실에 복도 창문 또는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 온라인 소통창구(카페, SNS, 블로그 등) 운영
  - 급식·주방 공개 : 학부모에게 식단 및 급식사진(중식) 매일 온라인 공개 및 주방 상시 공개
- 참여성
  - (연1회) 부모만족도 조사,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 (연2회) 부모 개별 상담, 부모교육
  - (분기1회) 운영위원회, 부모참여프로그램[1)]

  1)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필수로 2회 운영하고, 나머지 2회는 급식 보조, 일일교사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

  - (연중) 부모어린이집 참관
- 지속가능성
  - (연1회)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 (반기1회)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 다양성

• (연2회)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평일 07:30 ~ 19:30까지 운영(기본보육, 연장보육 운영), 19시30분까지 연장보육교사 배치가 원칙임,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보육을 미운영하거나 단축 운영은 불가

주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보육교사 근로시간은 별개이며, 근로계약 시에는 근로관계법령을 기본으로 함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다만,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의 종료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조정 가능

–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의무 참여**

○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내용 및 주기 준수)**

– 보육아동 연령별 표준보육과정 연간 계획안

– 안전교육·훈련실시 현황

– 안전점검 실시현황

–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위탁기관(진흥원)에서 정보공시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항목누락 등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조치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은 세부 선정기준 중 건물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선정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자가 → 임대, 전용 → 복합에 한함)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선정 당시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변경사항 발생 익일부터 30일 이내, 전체 선정기준)하여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유지

* 2017년 이후 신규 선정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사도별 선정 당시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공공형 선정 유지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 및 시·도(시·군·구)에서 정기적(예 반기별, 분기별)으로 점검

– 공공형어린이집이 아래의 경우로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유지 가능

• 품질변동요인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내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 단,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선정유지를 위한 일정요건 : 선정(직전 재선정) 당시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이상일 것

* 2017년 이후 신규 선정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사·도별 선정 당시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공공형 선정 유지

* 운영기간 및 보육교직원 근무경력에 따른 점수를 산정해야 할 경우(원장 및 보육교사 경력 등) 기존 어린이집 운영기간 및 보육교직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산정

○ **운영현황 조사 등 협조**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현황 조사 시 서류 제출 등 협조(거짓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사업실적 보고**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실적(열린어린이집 운영여부 포함)[1]을 반기별[2]로 지자체에 익월말까지 보고(거짓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취소)

1)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서식(증빙자료 포함)으로 제출하되, 별지 제14호 서식은 보고용 엑셀파일 별도 배부 예정

2)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20.3~8/'20.9~'21.2)

2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가 지급원칙

○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지급

나 지급방식

○ 전월 말일 24시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월 운영비 지급

* 다음 각 항목은 운영비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운영비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1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40만원	기본보육반 각 1개반당	*** 현원 1명 이상,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 산정제외 : 장애아 방과후, 방과후, 야간연장, 새벽반, 휴일반, 일시보육반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당	*** 3세 : 현원 8인 이상인 반 (2-3세 혼합반 제외)** *** 4세 이상 : 현원 11인 이상인 반** ※ 단, 지급기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3	교육·환경 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현원기준(방과후 아동 제외)**

(1)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 교사가 배정된 현원 1명 이상인 기본보육반 각 1개 반당 40만원 지급
  * 기본보육반이 아닌 방과후, 야간연장, 시간제 등 제외
- 겸직원장이 담임으로 있는 반, 장애아기본반[1]도 지급대상임
  1)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전담교사 인건비도 기존대로 지급

(2) 유아반 운영비

– 만 3~5세반 개소당 60만원 또는 30만원(유아 혼합반 포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반은 지원 대상 아님(부모 추가보육료 수납대상이 아님)

유아반 운영비 지급기준

▸ **(만 3세반, 3~4세 혼합반)**

– 현원 8인 이상 : 60만원, 현원 5인~7인 : 30만원

* (주의) 2~3세 혼합반은 대상 아님

▸ **(만 4세반, 5세반, 4~5세 혼합반)**

– 현원 11인 이상 : 60만원, 현원 5인~10인 : 30만원

▸ **(만 3~5세 혼합반)**

– 현원 8인 이상 : 60만원, 현원 5인~7인 : 30만원

(3) 교육환경 개선비

– 재원아동(현원) 1인당 1.5만원(방과 후 아동은 제외)

※ 주의사항

○ 월 운영비는 전월 말일 24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이후 아동 입·퇴소, 반 개설·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은 추가반영하지 않음

– 즉, 해당월 운영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다음 달 운영비 산정 시 변경된 현황이 반영됨

예시

아동의 입·퇴소 및 반 개설·폐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퇴소)** 60만원을 지급받은 3세반에서 월 중간에 아동이 퇴소하여 기준인원(8명) 아래로 감소하여도 기지급된 비용은 회수하지 않음

• **(입소)** 현원 7명으로 30만원을 지급받은 3세반에 월 중간에 아동이 입소하여 기준인원(8명)을 넘긴 경우에도 미지급된 30만원은 추가 지급하지 않음

* 월말 기준(말일 24시) 8명이 유지될 경우 다음 달 운영비로 60만원 지급됨

– 다만, 1일[1]에 반이 개설된 경우와 교사미배정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중 일정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소급적용 가능

1) '1일' 적용례

① 1일이 운영일이 아닌 경우(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등)는 그 다음날

② 1일이 공휴일이면서 금요일인 경우는 월요일까지 인정

• (예시) 1.1(금, 신정), 1.2(토) → 1.4(월) 개설된 반 소급대상으로 인정

소급적용 대상 및 지급절차

〈적용대상〉 * '1일' 적용례는 34쪽 하단 참고

(1)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 ① 1일에 반이 개설된 경우, ② 교사 미배정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중 아래 요건 충족 시 소급지원 가능

▶ **1일에 반이 개설된 경우**(교사가 배정된 현원 1명 이상인 기본보육반이어야 함)

▶ 전월 말일 당시 교사 미배정 상태였으나 **1일까지 임면보고**를 실시하여 **해당 월에 지자체 승인이 완료된 경우**

* 임면보고 신청 시 반배정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반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 **1일에 반이 개설된 경우** 해당반에 대한 운영비(유아반) 및 교육·환경 개선비(영아반, 유아반) 소급지원 가능(현원 산정시점은 1일 24:00)

* 기존 운영 중인 반은 전월말일 24시 기준 현원만을 적용하며, 월 중간에 아동이 추가로 입소한 경우에도 추가지급 하지 않음(단, 아동교체로 인한 일시적인 이동은 인정 ⇒ 31일 18시 2명 퇴소 후 1일자로 동일 반에 2명 입소)

〈소급지원 적용사례〉

구분	사 례	추가지급액 (익월 운영비에 반영)
기존에 운영 중인 반	기존에 운영 중이던 반의 담임교사 퇴사로 **신규교사** 채용 후 **10.1일자**로 임면보고 실시 → **10월 중 승인완료**	급여상승분 40만원
반 개설	신규아동 입소로 **10.1일 10명으로 구성된 만 3세 유아반(기본보육반) 신설** * 반 신설은 교사가 배정되어야 가능	급여상승분 40만원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지급절차〉

– 소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공문 등으로 **제출** (별도양식은 없음)

– 시·군·구에서는 관련사항 확인 후 **익월 운영비에 반영**하여 지급

* 어린이집의 신청 없이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반영가능

3 기타

○ 기관보육료는 계속 지급

○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원을 증원 및 감원하려는 경우 시·군·구는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보육수요와 함께 운영비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

*(시·군·구 변경인가 담당자) 어린이집 정원 증원 및 감원 신청이 들어온 경우 공공형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구 공공형 담당자에게 통보 → (시·군·구 공공형 담당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지원 가능여부를 시·도 담당자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후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안내

– 단, 당해 연도에는 정원 증원분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더라도 익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여야 함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절차

- 어린이집의 보조금 신청행위는 불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신청행위를 보조금 교부 신청으로 봄
- 시·군·구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자동생성된 운영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승인처리
- 소관 시·군·구는 매월 특정일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계좌로 운영비 지급
-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과목 중 323목 공공형운영비로 처리

○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Ⅳ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1 취소권자

○ **취소권자 : 시·도지사**

2 선정취소 사유

○ **평가 및 평가인증 유지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 평가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및 평가주기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 평가 지표: A등급 미만
- 제3차 평가인증 지표(통합지표) : A등급 미만
- 2차 및 3차 지표 시범사업: 90.00점 미만

*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 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 85.00점 미만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시·도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 단체, 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공공형 유지 가능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제1호부터 제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상세내용은 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 다. 제외대상 어린이집(5쪽) 참고)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처분시

- 원장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형 선정 취소
-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처분에 따라 평가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평가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당시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재선정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최근 통과한 재선정 기준에 준함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 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하였으나 같은 사항을 재차 적발한 경우

○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수납한도액 미준수시

○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학부모 및 관할 지자체 요청에도 야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지정기관만 해당)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공공형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정조치 완료 후 재차 적발된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시정조치 되지 않았거나 시정조치 완료 후 재차 적발된 경우

○ 선정 확정 이후, 건물 소유 및 이용여부, 품질변동요인 발생으로 소재지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미만일 경우

* 2017년 이후 신규 선정의 경우, 해당 시·도별 선정 당시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공공형 선정 유지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는 제외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않거나 지자체에 사업실적 허위자료 제출 확인 시 취소

○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설치·운영 및 재직 시

○ 해당 어린이집의 물리적 및 인적 환경이 동시에 변동됨으로 인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3 선정취소 절차

○ 시·군·구는 선정 후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 시·군·구는 행정처분(운영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시·도는 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는 취소 사유를 7일 이내에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진행

①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등 실시

* 어린이집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둠

②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실시

* 어린이집 제출 의견서 검토 후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결정

○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취소 통보를 하고 시·도(시·군·구)는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조치 함

○ 시·도는 선정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는 선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시·도에 서면보고

○ 선정취소일 : 처분 확정일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선정취소 사유 발생
시·군·구	선정취소 발생 확인·보고	• 선정취소 사유 확인 후 시·도에 서면보고
시·도	취소사유 확인 및 행정처분	•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행정처분 결정 • 시·군·구를 통하여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통보 –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조치 • 선정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시·군·구	지정서 및 현판 회수·폐기	• 시·도의 선정취소 후 결정사항을 어린이집에 통보 • 지정서, 현판 회수 폐기 서면보고 → 시·도지사

4 선정취소 된 경우의 보조금 지급

○ **선정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한 운영비 환수**

5 선정취소 사후처리

○ 선정 취소 처분 시 시·군·구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

* 선정취소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산 처리

○ 공공형어린이집이 취소되거나 자진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통상적인 행정구제 절차 이행 가능

행정사항

• 쟁송 중 집행정지 인용, 소송 승소 등으로 인해 선정취소 후 직권복원 시 익월부터 운영비 지급
  – 해당 월에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되 익월부터는 공공형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운영 포기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포기 가능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취하원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시·도에 선정취하원을 제출, 시·도는 취하원 접수 및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 취소 통보

– 시·도는 선정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선정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V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 보건복지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우수한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수요자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 7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을 위탁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재무회계 교육, 원장 및 교사연수 등 실시

1 운영 관리 사업

○ **목 적**

–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준 관리 및 건전하고 체계적인 재무회계 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자발적 관리능력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운영체계**

구 분	내 용
품질관리 컨설팅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준수 및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Self–진단과 방문 컨설팅 진행 〈과정 구분〉 Self–진단 / Self–진단 → 방문컨설팅
재무회계 교육	의무 및 희망참여 대상으로 재무회계 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 진행 〈교육 내용 구분〉 예·결산 작성의 실제 / 추가경정 예산의 실제
정보공시 안내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대상으로 매월 정보공시 현행화 안내

가 품질관리 컨설팅

– (내용)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인 재선정 기준과 재무회계 규칙을 확인

– (방법)

• Self-진단 : 재선정 기준 관련 체크리스트에 따라 어린이집 스스로 운영수준을 진단

• 방문컨설팅 : Self-진단을 토대로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맞춤형 피드백 제공

나 재무회계 교육

– (내용)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개정사항 안내 및 예·결산서 작성, 추가경정예산서 작성 관련 교육 및 실제 적용을 위한 실습

– (방법) 그룹별로 자료집 및 어린이집 예·결산서를 활용한 교육 진행

다 정보공시 안내

–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관리

– (방법) 전체 공공형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점검 및 미현행화 지자체 통보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 활용)

* 항목누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

2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사업

○ **목 적**

–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인식 함양을 통해 어린이집의 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이 우수 보육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운영체계**

구 분	내 용
원장연수	공공형 운영연차에 따른 의무참여 교육과정 운영 〈원장연수 교육과정 및 참여대상〉 기본과정: 선정 1년차 및 신규임용 원장 ⇨ 심화과정: 선정 2~3년차 원장
교사연수	보육교사의 경력 등을 고려한 의무 및 희망참여 교육과정 운영 〈교사연수 교육과정 및 참여대상 우선순위〉 기본과정: (의무대상) 선정 2년차 어린이집 교사 (희망참여 우선순위) 근속기간 2년 미만 및 경력 3년 미만인 교사 ⇨ 심화과정: (희망참여 우선순위) 근속기간 2년 이상 및 경력 3년 이상인 교사
상설특강	보육현장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특강 형태의 교육 진행

가 원장연수

구 분	내 용
기본과정	– (교과목)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소개 및 품질관리 안내,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문서관리, 놀이의 이해, 재무·회계 운영 등 – (방법) 주제별 특강 형태로 진행
심화과정	– (교과목) 보육과정의 실제, 놀이의 이해와 실제 – (방법) 강의 및 실습 형태로 진행

나 교사연수

구 분	내 용
기본과정	– (교과목) 공공형의 가치와 책임,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일지 및 영유아 관찰일지 작성 등 – (방법) 주제별 특강 형태로 진행
심화과정	– (교과목) 보육과정의 실제, 놀이의 이해와 실제 – (방법) 토론 형태의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

다 상설특강

– (내용)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및 운영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
– (방법) 특강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

3 운영 지원 사업

가 관계기관 관리

1) 지자체 담당자 교육

– (내용)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선정 및 운영(취소) 기준, 품질관리 사업, 행정지원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

– (방법) 특강형태로 진행하며, 권역별로 실시

2) 사업보고회

– (내용) 지자체 담당자,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컨설턴트, 강사진 등 품질관리 사업 각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사업 결과 공유 및 품질관리 발전 방안 등의 의견 수렴

– (방법) 각 분야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회 진행

나 전문정보 제공

– (내용)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질 관리를 지원하는 보육관련 전문 정보 제공

– (방법) 운영매뉴얼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취소기준과 보육관련 전문정보

다 전문가 인프라 운용

– (내용) 품질관리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관련 전문가 운용

– (방법)

- 원장 및 교사연수 강사진 운용: 자료집 집필, 기본 및 심화과정 강의 등
- 컨설턴트 운용: 품질관리 컨설팅 및 재무회계 교육 진행 등

라 홈페이지 및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 (내용)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편의성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및 업무지원시스템 운영·관리

– (방법) 공공형어린이집 홈페이지 및 사업 관련 업무지원시스템 기능 개선·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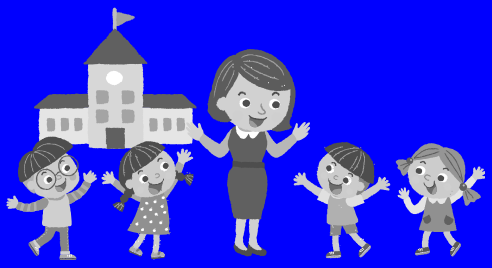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부록)

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2.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서식

3. 공공형어린이집 결산양식(예시)

4. 공공형어린이집 공무원용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5.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용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사용매뉴얼(공무원용)

부록 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배점 항목	신규선정	재선정		비고
		필수	운영	
ㅇ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등급 및 점수)	기본요건	A등급 90점 이상	–	
ㅇ 정원충족률	기본요건	지역별 기준 이상	–	• 지역별 조정 가능
ㅇ 행정처분·처벌 여부	제외대상	준수여부	–	
ㅇ 원장 및 대표자 1인 1시설	제외대상	준수여부	–	
ㅇ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제외대상 (5%)	준수여부 (10%)	–	
ㅇ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제외대상	준수여부	–	• 조건부 통과 (연내 이수)
ㅇ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제외대상	준수여부	–	
ㅇ 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운영기준	준수여부	–	
ㅇ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제외대상	준수여부	–	
ㅇ 어린이집 설치기준 충족	제외대상	준수여부	–	
ㅇ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해당없음	준수여부		
□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43점**	**–**	**13점**	
ㅇ 건물 소유형태	20점	–	–	•신규선정 기준
–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점	–	–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5점	–	–	
– 관리동 어린이집	15점	–	–	
– 임대 전용 어린이집	10점	–	–	
– 임대 복합 어린이집	5점	–	–	

배점 항목	신규선정	재선정		비고
		필수	운영	
ㅇ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	3점	
ㅇ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	5점	
ㅇ 열린어린이집 지정	5점	–	–	• 신규선정 기준
ㅇ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5점**	–	**5점**	• 재선정 심사일이 '20.6월 이전인 경우 조건부 통과 (3개월내 준수)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5점	–	5점	
–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3점	–	3점	
– 연장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1점	–	1점	
ㅇ 최근 6개월 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5점**	–	–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모두 기준 이상 지출	5점	–	–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하나라도 기준 미만 지출	2점	–	–	
□ 보육교직원 전문성	**50점**	**–**	**55점**	
ㅇ 1급 보육교사 비율	15점	–	20점	
–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15점	–	20점	
–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10점	–	15점	
–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5점	–	10점	
ㅇ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	4점	
– 7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4점	–	4점	
– 50% 이상 70% 미만	2점	–	2점	
ㅇ 원장의 전문성	최대 6점	–	최대 6점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	2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	2점	
–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점	–	2점	

배점 항목	신규선정	재선정		비고
		필수	운영	
ㅇ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15점	–	15점	• 신규 선정은 총점 내에서 별도 배점
–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국공립 1호봉간 금액 이상 차등 지급	–	–	15점	
– 1호봉 일괄 지급	–	–	10점	
ㅇ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10점	–	10점	
–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10점	–	10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5점		5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3점	–	3점	
□ 지역별 자율 평가	**최대 7점**	**–**	**최대 7점**	
ㅇ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장애아보육,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1~3점	–	1~3점	• 필수 (지역별 상황에 따라 1~3점 배점 부여 가능)
ㅇ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1점	–	1점	• 필수
ㅇ 품질관리사업 희망참여 이수 여부	–	–	2점	• 필수
ㅇ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3~5점	–	1~3점	• 지역별 자율 평가(7점)에서 취약, 시간제, 품질관리사업 참여 점수 제외 후 1~3점 배점 부여 가능
합 계	**100점**	**25점**	**75점**	

부록 2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어린이집명		최초인가 일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주소)	우편번호 □ □ □ □ □				
대표자 * 인가증 제출	이름		연락처		
원장 * 경력 및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이름		연락처		
	학력	□ 대학(원)명 :	□ 전공 :	□ 학위 :	
	보육교사 경력		원장 경력		
정원 / 현원	□ 정원(명)	□ 현원(명)			
농어촌지역 *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 지역	□ 有 □ 無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야간연장보육	□ 휴일보육	□ 장애아보육		
건물소유형태	□ 자가 전용 □ 자가 복합 □ 임대 전용 □ 임대 복합 □ 아파트 관리동 內 어린이집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이용형태 전용(예 : 공동주택 내 위치한 임대 어린이집은 임대 전용 선택)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 지정 □ 미지정				

보육교직원 현황

※ 유의사항 - 출산·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 보육교직원 경력증명 증빙서류 제출(보육교사 보수교육 수료증 및 관련학과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치료사	기타	특수교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이름	자격구분		현 자격 취득일자	현 어린이집 임용일자	최근 보수교육 일자	학력	
		자격증	급수				학위	전공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교사 자격증						
		특수교사 자격증						
연장가능								

※ 자격구분 : 동일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모두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원장포함) 관련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일시	
		☐ 無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有 ☐ 無			
	비상재해대비시설	☐ 有 ☐ 無			
	놀이터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기타(공동놀이실 설치 등)) ☐ 無 * 공동놀이실 선택 시 어린이집 인·허가 도면, 최근 한 달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제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 및 포기 여부	☐ 有 (취소 및 포기 일자, 사유 :) ☐ 無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 설치·운영자란 대표자를 의미함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여부	☐ 이수완료(명) ☐ 이수예정(명) * 신청서 제출로 증빙되는 경우 ☐ 미이수(명)	원장 보수교육 이수여부	☐ 이수완료 ☐ 이수예정 * 신청서 제출로 증빙되는 경우 ☐ 미이수	
	정보공시 여부	☐ 공시 ☐ 공시하지 않음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 융자금 상환액 금액		월 보육료 수입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	☐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미준수			
	민원 발생 여부	☐ 有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 無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이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 어린이집이 건물의 1층에 소재한 경우

어린이집형태	세부 검토 항목	충족여부
1층 (3항목)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외의 비상용 출구(사람 출입 가능한 창문, 베란다 등)가 있음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이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 있음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 ) ( ) ( )

☐ 어린이집이 건물의 2층 이상에 소재 또는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 건물 전체 사용 시 1층에 해당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함

○ 아래의 ①~③ 중 하나라도 충족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인정

① – 2층, 3층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로 정상적으로 작동함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 아니오( )

②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 아니오( )

③ – 아래 어린이집 형태에 따른 세부 검토 항목을 모두 충족함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 아니오( )

2층 이상	비상계단 (4항목)		○ 비상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함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 ○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 높이는 1.5m 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임	( ) ( ) ( ) ( )
	피난용 미끄럼대 (4항목)	모두 충족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 ○ 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미끄럼대는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함	( ) ( ) ( )
		2개중 1개 충족	○ (직선형 미끄럼대 경우)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는 25° 이상~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 (나선형 미끄럼대 경우)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설치함	( ) ( )

[별지 제2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구분	총점	건물 소유 형태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열린 어린 이집 지정 여부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	1급 보육 교사 비율	영유아 관련 학과 전문 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 교사	원장의 전문성	담임 보육 교사 급여 지급 수준	현 어린 이집 근속 보육 교사	지역별 자율 평가
배점	100점	20점	3점	5점	5점	5점	5점	15점	4점	6점	15점	10점	7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43점	소계	
건물 소유형태	20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5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5점	③ 관리동 어린이집	
	10점	④ 임대 전용 어린이집	
	5점	⑤ 임대 복합 어린이집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5점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 재선정 심사일이 '20.6월 이전인 경우 조건부 통과 (3개월내 준수)	5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3점	②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5점	①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모두 기준 이상 지출	
	2점	②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하나라도 기준 미만 지출	

[별지 제2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보육교직원 전문성	50점	소계	
1급 보육교사 비율	15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10점	②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5점	③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① 70% 이상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2점	② 50% 이상 70% 미만	
원장의 전문성	2점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최대 15점	구분 / 점수 / 교사 수 191만원 이상 / 15점 / a 188.5만원 이상~191만원 미만 / 12점 / b 186만원 이상~188.5만원 미만 / 9점 / c 183.5만원 이상~186만원 미만 / 6점 / d 180만원 이상~183.5만원 미만 / 3점 / e 180만원 미만 / 0점 / f 계 / N * 계산식 : [(15 × a) +(12 × b) + (9 × c) +(6 × d)+(3× e)+ (0× f)] / N,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5점	②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지역별 자율 평가	최대 7점	소계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요건에 따라 자체평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및 매도 경력 여부 등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정보의 이용 목적]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 확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어린이집	직위	☐ 대표자 ☐ 원장
어린이집 주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 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어린이집 기본정보	어린이집명		최초인가 일자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팩스번호	
	농어촌지역 *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 지역	☐ 有 ☐ 無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정부지원 여부	☐ 인건비 ☐ 차량운행비 ☐ 교재교구비 ☐ 지자체특수시책				
	어린이집 및 원장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일자 :)	행정 처분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의2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8조 * 원장에 한함 ☐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 無(공고일 현재 5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원장)				
	비상재해대비시설	☐ 有 ☐ 無				
	놀이터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기타(공동놀이실 설치 등)) ☐ 無 * 공동놀이실의 경우 어린이집 인·허가 도면, 최근 한 달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를 통해 확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포기 여부	☐ 有 (취소 및 포기 일자)	취소 및 포기 사유			
		☐ 無(공고일 현재 3년 이내 공공형 선정 취소 및 포기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 설치·운영자란 대표자를 의미함				

[별지 제3호 서식] [2 면]

<table>
<tr><th colspan="6">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th></tr>
<tr><td rowspan="7">제외 대상 요건</td><td>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td><td colspan="2">☐ 이수완료(　　명)
☐ 이수예정(　　명)
* 신청서 제출로 증빙되는 경우
☐ 미이수(　　명)</td><td>원장 보수교육 이수여부</td><td colspan="2">☐ 이수완료
☐ 이수예정
* 신청서 제출로 증빙되는 경우
☐ 미이수</td></tr>
<tr><td>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td><td colspan="5">보육료 수입의 ☐ 5% 미만 ☐ 5% 이상</td></tr>
<tr><td>정보공시 여부</td><td colspan="5">☐ 공시 ☐ 공시하지 않음</td></tr>
<tr><td>공공형어린이집 매도경력</td><td colspan="5">☐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td></tr>
<tr><td>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td><td colspan="5">☐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미준수</td></tr>
<tr><td rowspan="3">민원 발생 여부</td><td rowspan="2">☐ 有</td><td>민원 내용</td><td>발생 일시</td><td colspan="2">민원 발생 횟수</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無</td></tr>
</table>

[별지 제3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구분	총점	건물 소유 형태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열린 어린 이집 지정 여부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	1급 보육 교사 비율	영유아 관련 학과 전문 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 교사	원장의 전문성	담임 보육 교사 급여 지급 수준	현 어린 이집 근속 보육 교사	지역별 자율 평가
배점	100점	20점	3점	5점	5점	5점	5점	15점	4점	6점	15점	10점	7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43점	소계	
건물 소유형태	20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5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5점	③ 관리동 어린이집	
	10점	④ 임대 전용 어린이집	
	5점	⑤ 임대 복합 어린이집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5점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 재선정 심사일이 '20.6월 이전인 경우 조건부 통과 (3개월내 준수)	5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3점	②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5점	①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모두 기준 이상 지출	
	2점	②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하나라도 기준 미만 지출	

[별지 제3호 서식] [4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보육교직원 전문성	50점	소계	
1급 보육교사 비율	15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10점	②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5점	③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① 70% 이상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2점	② 50% 이상 70% 미만	
원장의 전문성	2점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최대 15점	구분 / 점수 / 교사 수 191만원 이상 / 15점 / a 188.5만원 이상~191만원 미만 / 12점 / b 186만원 이상~188.5만원 미만 / 9점 / c 183.5만원 이상~186만원 미만 / 6점 / d 180만원 이상~183.5만원 미만 / 3점 / e 180만원 미만 / 0점 / f 계 / N * 계산식 : [(15 × a) +(12 × b) + (9 × c) +(6 × d)+(3× e)+ (0× f)] / N,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5점	②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지역별 자율 평가	최대 7점	소계	

[별지 제4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대상기관 자기평가서				
어린이집명			공공형 선정일자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농어촌지역	☐ 有 ☐ 無 *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 지역			
설립유형	☐ 민간 ☐ 가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대표자	이름		연락처	
원장	이름		연락처	

〈 안 내 사 항 〉

1.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통과를 위해서는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운영항목 배점의 합이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다만, 일부항목의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시 '조건부 통과'를 인정하며, 이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해당항목에 표시 한 후 별지 6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대상기관 필수항목 자기평가서(모두 준수 시 25점 배점)			
번호	내용	확인결과	제출서류
1	평가 및 평가인증 등급·점수	☐ (평가지표) A등급 ☐ (통합지표) A등급 ☐ (2차 지표) 90점 이상 ☐ (3차 지표) 85점 이상	지자체확인
2	정원충족률	☐ 준수	지자체확인
3	행정처분·처벌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지자체확인
4	원장 및 대표자 1인 1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 '12년 이후 선정 시 기본요건으로 제한하였으며, 선정 이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관련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추후 발견 시 공공형 선정취소 및 3년간 진입이 제한됨	☐ 해당사항 없음	지자체확인 등
5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중	☐ 10% 미만	관련 회계서류
6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 이수완료 ☐ 이수예정(조건부) –기한:	교육이수 증빙서류
7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 준수	지자체확인
8	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 준수	지자체확인

[별지 제4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대상기관 자기평가서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대상기관 필수항목 자기평가서(모두 준수 시 25점 배점)			
번호	내용	확인결과	제출서류
9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 모든 항목 공시완료	지자체확인
10	어린이집 설치기준 충족	□ 놀이터 충족	지자체확인 (단, 50인 미만 시설은 증빙서류 제출)
		□ 비상재해대비시설 충족	지자체확인
11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자체확인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대상기관 운영항목 자기평가서				
번호	내용	배점	배점 기준	점수
1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	
2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	
3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 재선정 심사일이 '20.6월 이전인 경우 조건부 통과 (3개월내 준수)	5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3점	②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4	1급 보육교사 비율	20점	①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 보육교사가 총 3명일 경우, 2명 이상	
		15점	② 50% 이상 70% 미만(* 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10점	③ 30% 이상 50% 미만(* 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5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① 70% 이상 * 보육교사가 총 3명일 경우, 2명 이상	
		2점	② 50% 이상 70% 미만	
6	원장의 전문성	2점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대상기관 자기평가서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대상기관 운영항목 자기평가서				
번호	내용	배점	배점 기준	점수
7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15점	① 경력 등에 따른 차등 지급 * 국공립 1호봉간 금액 이상 차등 지급	
		10점	② 1호봉 일괄 지급	
8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5점	②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9	지역별 자율평가	7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점수
필수항목 (조건부 통과 포함)	25점	☐ 필수항목 모두 준수 ☐ 필수항목 조건부 준수(조건부 항목: 개) ☐ 필수항목 미준수 (미준수 항목: 개)	
운영항목 (조건부 통과 포함)	75점		
총 점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요건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및 매도 경력 여부 등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유치원 설치·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정보의 이용 목적]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 확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어린이집	직위	☐ 대표자 ☐ 원장
어린이집 주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 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이행계획서		
어린이집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설립유형	☐ 민간 ☐ 가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이행예정 내용	〈주의사항〉 이행을 완료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까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됩니다.	
	☐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해당 연도 말)	이수예정자(직위 및 성명) : 이행예정일 :
	☐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3개월) * '20.6월 이전 심사일 경우	이행예정일 :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이행기간은 재선정 유효기간 시작시점으로부터 기산 (예시: 조건부 3개월일 때, 유효기간 시작시점이 9월 1일이면 11월 30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어린이집 원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포기신청서				
어린이집명			최초 공공형 선정일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설립유형	☐ 민간 ☐ 가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대표자	이름		연락처	
원장	이름		연락처	

상기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재선정 심사를 희망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재선정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어린이집 원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지자체 평가서					
어린이집 기본정보	어린이집명		유형	☐ 민간	☐ 가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농어촌지역	☐ 有 ☐ 無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 지역			
공공형 정보	최초 공공형 선정일자				
재선정 결과	**☐ 통과 ☐ 미통과**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대상기관 필수항목 평가서(모두 준수 시 25점 배점)			
항목	내용	준수	미준수
1	평가 및 평가인증 등급·점수	☐ (평가지표) A등급 ☐ (통합지표) A등급 ☐ (2차 지표) 90점 이상 ☐ (3차 지표) 85점 이상	☐ 등급 및 점수 미달
2	정원충족률	☐ 준수	☐ 미준수 – 지역기준 : _____% – 현재충족률 : _____%
3	행정처분·처벌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위반 ☐ 사회복지법 위반 ☐ 원장자격정지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아동학대) ☐ 리베이트 혐의확인
4	원장 및 대표자 1인 1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 해당사항 없음	☐ 미준수 – 대상자 : *원장 또는 대표자 000* – 대상시설 :

[별지 제7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지자체 평가서

항목	내용	준수	미준수
5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중	☐ 10% 미만	☐ 10% 이상
6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 이수 ☐ 이수예정(조건부) – 기한:	☐ 미이수
7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 준수	☐ 미준수
8	보육료 추가수납 금지	☐ 준수	☐ 미준수
9	어린이집 정보공시	☐ 모든 항목 공시	☐ 미공시 항목 있음
10	어린이집 설치기준	☐ 충족	☐ 놀이터 미충족 ☐ 비상재해대비시설 미충족
11	열린어린이집 운영	☐ 준수	☐ 미준수

확인 결과		
	_____항목 준수	_____항목 미준수
	☐ 필수항목 모두 준수(25점) ☐ 필수항목 중 조건부 준수(조건부 항목: 개) ☐ 필수항목 미준수(미준수 항목: 개)	

[별지 제7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지자체 평가서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대상기관 운영항목 평가서(9개 항목 총 75점)				
번호	내용	배점	배점 기준	점수
1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2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3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 '20.6월 이전 심사일 경우 조건부 통과(3개월 내 준수)	5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3점	②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4	1급 보육교사 비율	2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15점	②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10점	③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5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① 70% 이상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2점	② 50% 이상 70% 미만	
6	원장의 전문성	2점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7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15점	① 경력 등에 따른 차등 지급 *국공립 1호봉간 금액 이상 차등 지급	
		10점	② 1호봉 일괄 지급	
8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5점	②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9	지역별 자율평가	7점		
소 계				

[별지 제8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제0000-00000호

공공형어린이집
보건복지부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어린이집명: 대한민국어린이집
대 표 자: 홍길동
주 소: 경기도
유효기간: 20 . . ~20 . .

위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합니다.

0000년 00월

00시장(도지사)

[별지 제9호 서식]

유의사항

1. 공공형어린이집 유지를 위해서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기준은 선정이후 정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지급내역,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중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며 취소된 경우 향후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진입이 제한됩니다.
4.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종료 이전에 재선정 심사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위를 재부여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선정 심사기준은 선정당시의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정책 및 재정여건에 따라 운영비 지급방식, 지급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공공형어린이집은 모범 어린이집으로서 정부의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야 합니다.

변경사항

날짜	내용	기록자 ㊞

[별지 제10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 . .

수 신 : ○○○어린이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4">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td></tr>
<tr><td rowspan="2">2. 당사자</td><td>대표자 성명</td><td colspan="2"></td><td>어린이집 명</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4">○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 선정 이후 취소사유 발생
– 취소사유 :</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4">○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 귀 원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확정일 익월 1일부터 종료함</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rowspan="5">6. 의견제출</td><td rowspan="4">제출처</td><td>기관명</td><td></td><td>부서명</td><td></td></tr>
<tr><td>주 소
(전화)</td><td colspan="3">(☎)</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3"></td></tr>
<tr><td>fax</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제출기한</td><td colspan="3">년 월 일까지</td></tr>
</table>

○○시(도) 지사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table>
<tr><th colspan="5">의 견 제 출 서</th></tr>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3">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td></tr>
<tr><td rowspan="2">2. 당사자</td><td>대표자성명</td><td></td><td>어린이집 명</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3. 의견</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4. 기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td></tr>
<tr><td>비고</td><td colspan="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별지 제12호 서식]

행 정 처 분 서

1.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명 :

○ 어린이집 주소 :

○ 어린이집고유번호 :

○ 대표자 성명 :

2. 처분 내용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귀 원에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을 통지합니다.

○ 처분제목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 처분사유 :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에 심판청구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선택적으로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도 지 사(시장)

[별지 제13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하원						
어린이집명		최초인가일자		평가 및 평가인증 시 부여받은 어린이집 ID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원장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 취하 사유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 양식												
어린이집명			시도			시군구						
선정연도			원장명			대표자명						
현원/정원			농어촌 여부			설립유형						
1. 안정적인 기관운영	① 정원충족률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			②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								
	6개월 평균(%)			(%)								
2. 전문적인 보육 교직원 관리	① 원장 및 담임교사 보수교육 이수		②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③ 1급 담임교사 비율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			④ 담임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				
	준수 ( )	미준수 ( )	준수 ( )	미준수 ( )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차등 지급 ( )		1호봉 지급 ( )		
		미준수 교직원명 ( )			50% 이상 70% 미만 (농어촌 30%이상 50% 미만) (%)			차등 금액 ( )원				
					30% 이상 50% 미만 (농어촌 15%이상 30% 미만) (%)							
3. 수요자 맞춤형 보육	① 정보공시 현행화		② 열린어린이집 운영		③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현행화 ( )	미현행화 ( )	운영( ) *별도 증빙서류 제출	미운영 ( )	운영( ) – 장애아보육( ) – 휴일보육( ) – 야간연장보육( ) – 시간제보육( ) – 기타( ) * 예시: 다문화, 영아전담 등					미운영 ( )		
4. 영유아 안심 보육	① 어린이집 설치기준				② 놀이터 설치 검사							
	준수( )		미준수( )		대상( ) 검사일( )			대상 아님( )				
5. 투명한 회계 운영	① 급식·간식재료비 적정 집행		② 필요경비의 적정 수납 및 집행		③ 보육교직원 퇴직금 적정 관리 *매월기본급의1/12적립(1년 근무시 1개월분 급여액)							
	준수 ( )	미준수 ( )	준수 ( )	미준수 ( )	적정적립 ( )	과다적립( ) 금액( )원		미달적립( ) 금액( )원				
6. 품질관리 사업 참여현황	① 품질관리컨설팅		② 재무회계 교육		③ 원장연수			④ 교사연수			⑤ 상설특강	
	의무참여 ( ) • 진행일( ) • 미진행( )	희망참여 ( ) • 진행일( ) • 미진행( )	의무참여 ( ) • 진행일( ) • 인원수( ) • 미진행( )	희망참여 ( ) • 진행일( ) • 인원수( ) • 미진행( )	의무참여 ( ) • 진행일( ) • 미진행( )	대상아님 ( )		의무참여 ( ) • 진행일( ) • 인원수( ) • 미진행( )	희망참여 ( ) • 진행일( ) • 인원수( ) • 미진행( )		참여 ( ) • 진행일( ) • 인원수( ) • 미진행( )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보고

※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적보고
– 연1회('20.3~'21.2)/반기('20.3~8/'20.9~'21.2)/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증빙서류는 별첨

어린이집명		시도		시군구	
선정연도		원장명		대표자명	
현원/정원		농어촌 여부		설립유형	

세부항목	유	무
1. 개방성		
ㅇ **공간 개방성**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ㅇ **급식·주방 공개** – 식단 및 급식사진(중식)을 매일 온라인 공개 – 어린이집 내 주방을 학부모 등에 상시 공개		
ㅇ **온라인 소통 창구**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 운영		
2.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실시일자	내용
ㅇ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ㅇ **부모 개별상담**(연 2회)	*1회(2020.00.00)* *2회(2020.00.00)*	
ㅇ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1회(2020.00.00)* *2회(2020.00.00)* *3회(2020.00.00)* ...	
ㅇ **부모교육** – 계획안, 안내문, 실시횟수, 결과기록(활동보고서)	*1회(2020.00.00)* *2회(2020.00.00)*	
ㅇ **부모참여 프로그램** ※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필수로 2회 운영하고, 나머지 2회는 급식 보조, 일일교사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	*1회(2020.00.00)* *2회(2020.00.00)* *3회(2020.00.00)* *4회(2020.00.00)*	
ㅇ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1회(2020.00.00)*	
ㅇ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반기 1회)	*1회(2020.00.00)* *2회(2020.00.00)*	
ㅇ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1회(2020.00.00)* *2회(2020.00.00)*	
ㅇ **부모만족도 조사**(연 1회) – 만족도 조사지, 안내문, 결과지		
ㅇ **부모 어린이집 참관**		

위와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을 보고합니다. (증빙자료 별첨)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부록 3

공공형어린이집 결산양식(예시)

〈 _____년 _____월 급여지급내역〉

연번	성명	담당	급여지급내역			비고
			총 급여(A)	공제금액(B)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교사 실수령액 (A–B)	
1		나무반 담임교사				
2						
3						
4						

* 월별 1장씩 작성 (지자체에서 별도 정산서식 활용 가능)

* 총 급여 기재 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수당은 미포함하도록 함

〈_____년 월별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구분	보육료 계(A)	세부내역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B)	비중 (B/A)*100
		기관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연장 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각 지역별 금액 적용시)		
1월					3세 @명 : 4세 @명 : 5세 @명 :		_____%
2월							
3월							
4월							

* 일년치를 하나의 표에 작성

부록 4

공공형어린이집 공무원용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공고(시도 담당자)

가. 공공형 신규 선정 사업공고 기간 설정

[행정지원시스템] ⇨ ① [어린이집운영] ⇨ ② [공공형관리] ⇨ [신청관리] ⇨ ③ [사업공고(월)] 클릭 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공고] 팝업 생성 ⇨ ④ [추가] 클릭 ⇨ ⑤ 사업공고(월) 생성 후 [해당월]에 체크 ⇨ ⑥ [저장] 클릭 ⇨ ⑦ [처리되었습니다] 팝업 생성 후 [확인]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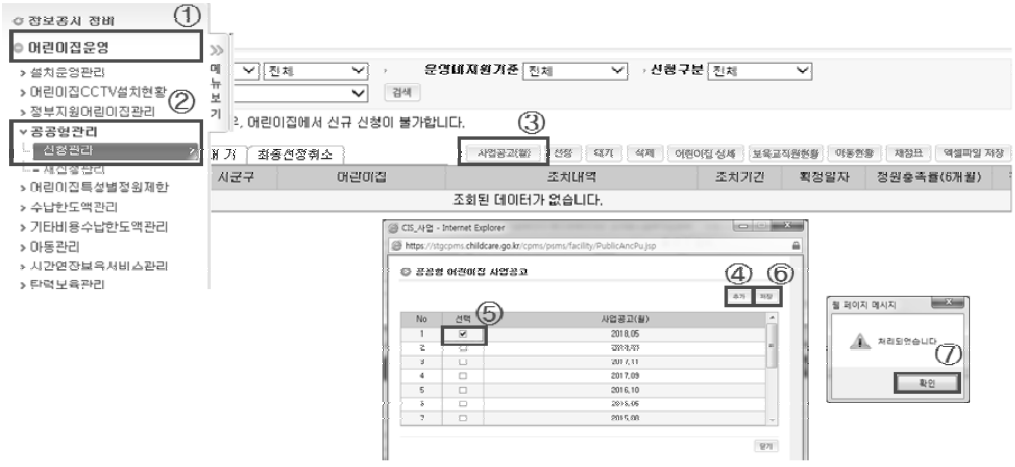

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추천(시군구 담당자)

가. 공공형 신청 어린이집 검색

[행정지원시스템] ⇨ ① [어린이집운영] ⇨ ② [공공형관리] ⇨ [신청관리]

나. 어린이집 정보 및 자기평가서 검토

③ 〈신청〉탭을 선택 ⇨ ④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시설 검색 ⇨ ⑤ 해당어린이집 [선택] 체크 ⇨ ⑥ [어린이집 상세], [보육교직원현황], [아동현황]에서 보육통합시스템 상 정보 확인 ⇨ ⑦ [첨부파일]의 파일명을 클릭하여 ⑧ [선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내용 확인

다. 어린이집 평가(채점표 작성)

어린이집 상세 내용 및 자기평가서 확인 후 ⇨ ⑨ [채점표] 버튼을 클릭하여 각 영역별 점수 입력 후 저장하면 총점이 자동 합산되어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계산됨

※〈신청〉탭 조회 시 표 목록 중 〈우선순위〉는 연번이며, 채점표 작성 후 저장하면 총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총점에서 낮은 총점 순으로 변경됨

라. 채점표 작성

⑩ [채점표] 점수 채점 시 (자동생성 항목은 하위내용 점수 입력 시 자동으로 점수 산정 ⇨ ⑪ 점수 채점표 입력 후 [저장]

◎ 채점표

어린이집

⑩

배점항목	기본	점수 [시군구입력]
□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43점	0 점 (자동생성)
○ 건물 소유형태	20점	
-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점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5점	0 점 범위 : 5~20점
- 관리동 어린이집	15점	
- 임대 전용 어린이집	10점	
- 임대 복합 어린이집	5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0 점 범위 : 0~3점
○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0 점 범위 : 0~5점
○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5점	
○ 연장반 운영 및 전문 교사 채용 여부	5점	
- 연장반의 50% 이상 전문교사를 배치한 경우	5점	0 점 범위 : 1점~5점
-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문교사를 배치한 경우	3점	
- 연장반의 20% 미만 전문교사를 배치한 경우 (*연장반 미운영 포함)	1점	
○ 최근 6개월 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5점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모두 기준 이상 지출	5점	0 점 범위 : 2점~5점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하나라도 기준 미만 지출	2점	
□ 보육교직원 전문성	50점	0 점 (자동생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15점	
- 70% 이상(*농어촌50% 이상)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15점	0 점 범위 : 0~15점
- 50%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10점	
-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5점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 70% 이상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4점	0 점 범위 : 0~4점
- 50% 이상 70% 미만	2점	
○ 원장의 전문성	6점	0 점 (자동생성)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0 점 범위 : 0~2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0 점 범위 : 0~2점
-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점	0 점 범위 : 0~2점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최대 15점	
-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국공립 1호봉간 금액 이상 차등 지급	15점	0 점 범위 : 0~15점
- 1호봉 일괄 지급	10점	
○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10점	
-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이상	10점	0 점 범위 : 0~10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5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3점	
□ 지역별 자율 평가	최대 7점	0 점 범위 : 0~7점
총계	100점	0 점

⑪ 저장 닫기

※ 100%

※ '1급 보육교사 비율'과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항목 평정 시 유의사항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1급 및 전문학사학위 소지' 항목의 해당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비율이 66.67%로 70.00% 미만임(교사겸직 원장 제외)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해당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하여 평정

마. 공공형 신청 어린이집 검색

⑫ [대표자선정취소여부] 로 '대표자의 3년 이내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여부' 확인
⇨ ⑬ 해당 어린이집 [선택]후 상단의 [선정추천] 클릭 ⇨ 해당 어린이집 〈선정추천〉탭으로 이동
⇨ '선정 추천' 완료로 시도 담당자 시스템에 전달
⇨ ⑭ 선정 반려 시 [반려] 클릭 후 사유 입력 ⇨ 해당 어린이집은 〈반려〉탭으로 이동

* [반려]시 해당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신청 가능

* 시도에서 최종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할 경우 시군구는 〈최종선정〉탭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추천 취소(시군구 담당자)

가. 선정추천 이후 선정추천 취소

① 〈선정추천〉탭 클릭 ⇨ ② 해당 어린이집 [선택]에 체크 ⇨ ③ 상단의 [선정추천취소] 클릭 후 사유 입력

4.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도 담당자)

※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입력은 매 월 말일 및 말일 전날만 가능

가. 시군구에서 선정추천된 공공형어린이집 검색

[행정지원시스템] ⇨ ① [어린이집운영] ⇨ ② [공공형관리] ⇨ [신청관리]

나. 선정추천 어린이집 정보 및 채점표 확인 후 선정

③ 〈선정추천〉탭에서 [검색] 클릭 후 해당 어린이집 ④ 선택 ⇨ ⑤ [어린이집상세, 보육교직원현황, 아동현황, 채점표] 확인 후 ⇨ ⑥ [선정] 클릭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탭으로 이동

※ '선정추천'된 어린이집은 상단의 〈채점표(시군구에서 작성)〉와 첨부파일(어린이집에서 작성)을 참조하여 시도별 선정계획에 따라 최종 선정

*(예비 선정 대상 어린이집)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대기]버튼 클릭

다. 최종 선정 명단 확인

⑦ 〈선정〉탭에서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 확인 가능

※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은 시군구 〈최종선정〉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5.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예비선정 관리)(시도 담당자)

가. 예비선정(대기) 어린이집 지정

① 〈선정추천〉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② 선택 ⇨ 상단의 ③[대기] 버튼 클릭

나. 예비선정 어린이집 선정 방법

④ 〈대기〉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⑤ 선택 ⇨ 상단의 ⑥[선정] 버튼 클릭

2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1.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평가(시군구 담당)

가. 공공형 재선정 대상 및 신청 확인

– 2차 재선정 대상 확인

재신청 관리에서 ① [확정] ⇨ ② [신청일] 또는 ③ [유효기간]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재선정 어린이집 확인

– 1차 재선정 대상 확인(매년 1차 재선정 어린이집 명단 자동 업데이트)

④ [미신청] 탭에 나타난 어린이집은 해당년도 재선정 진행 대상임

– 재선정 신청 및 신청서 확인(별도 신청 기간 설정 없음)

⑥ [신청] 탭 ⇨ ⑦ [선택] ⇨ ⑧ 신청서 클릭 ⇨ ⑨ 신청서 파일명 클릭 후 신청서 확인

나. 공공형 재선정 신청 어린이집 평가
- 필수항목 평가 등록

① [신청] ⇨ ② [선택] 목록 중 해당어린이집 체크 ⇨ ③ [재선정평가] 클릭 시 [재선정 평가지] 팝업창 생성 ⇨ ④ 필수항목 평가 후 [필수항목 결과]에 [○준수 ○준수(조건부) ○미준수] 중 해당란에 체크

– 운영항목 평가 등록

필수항목 이 준수, 조건부 준수일 경우 운영항목 문항 생성 ⇨ ⑤ 해당 항목별 점수 입력 ⇨ ⑥ 최종 점수 확인 ⇨ ⑦ [저장] 클릭 ⇨ 재선정 평가지 등록 후 ⇨ 〈평가완료〉 탭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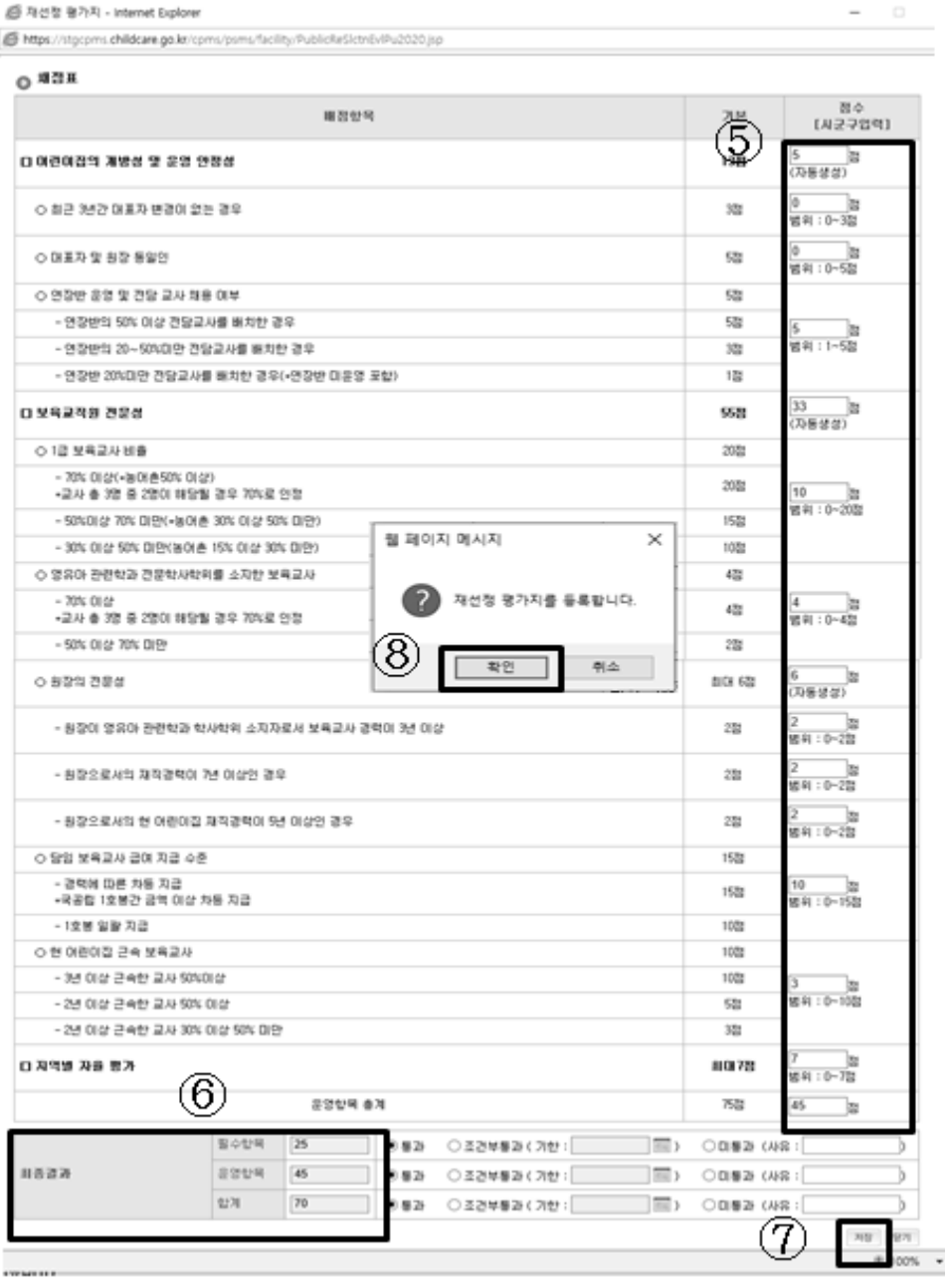

2.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확정(시도 담당)

※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입력은 매 월 말일 및 말일 전날만 가능

가. 공공형 재선정 신청 어린이집 목록 및 신청서 확인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 [재신청관리] ⇨ ① 〈평가완료〉 탭에서 어린이집 검색 ⇨ ② 해당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③ [재선정평가] 클릭하여 시군구에서 작성한 평가내용 확인 ⇨ ④ [신청서] 목록의 [확인]을 클릭하여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재선정 신청서 내려 받기 가능 ⇨ ⑤ 해당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확정] 버튼 클릭시 〈확정〉 탭으로 이동

나. 공공형 재선정 확정 목록 확인

⑥ 〈확정〉 탭에서 어린이집 검색 ⇨ ⑦ 해당어린이집 통과여부 및 총점 등 확인

3.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신청내역 반려(시군구 담당자)

① 〈신청〉 탭에서 어린이집 검색 ⇨ ② 해당어린이집 선택 ⇨ ③ 상단의 [반려]버튼 클릭 ⇨ 반려완료

3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 및 포기

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입력은 매 월 말일 및 말일 전날만 가능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 [신청관리] ⇨ ① [선정]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② [선정취소] 클릭 ⇨ 최종선정 취소사유 입력 팝업창에서 ③ 취소일자 입력 ⇨ ④ 취소유형 선택 ⇨ ⑤ 저장

○ 최종선정 이후 아래의 사유로 취소 시 취소날짜로부터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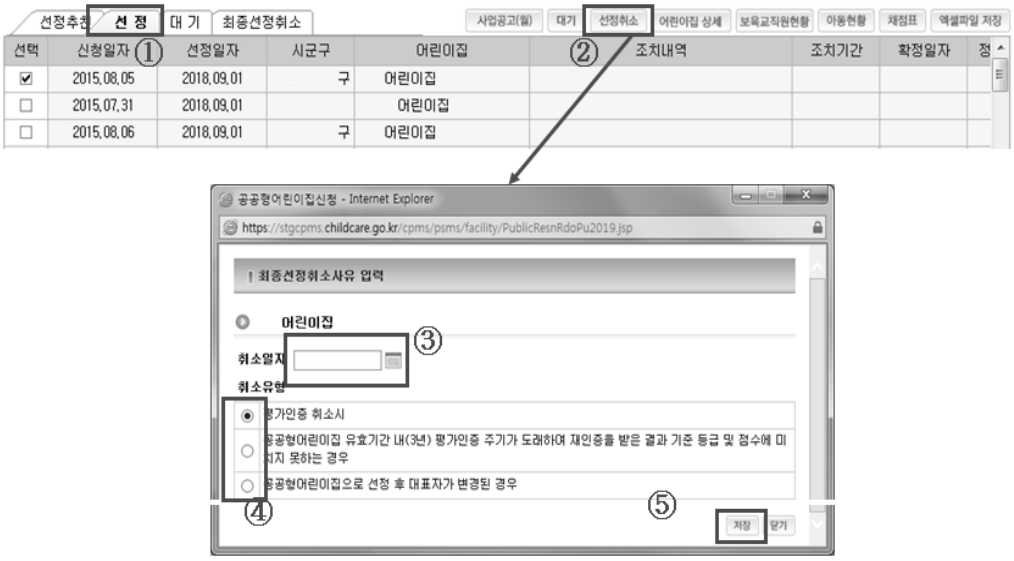

부록 5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용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신청

1. 설치운영관리 접속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① 어린이집운영 ⇨ ② 공공형어린이집관리 ⇨ 공공형 선정관리

공공형 선정관리 하단의 ③ [신규신청] 버튼 클릭

2. 공공형 신규 신청서 작성

[신규신청]버튼 클릭 후 팝업창 생성 ⇨ ① 사업공고월 확인(해당월 여부) ⇨ ② [양식다운로드] 클릭 후 신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한글파일) ⇨ 파일 저장 후 상세내용 수기 입력 ⇨ ③ [찾아보기] 클릭 후 작성한 첨부파일 첨부 ⇨ ④ 신청서 첨부 후 기본정보 생성 클릭 시 ⑤번 란에 기본정보 자동 생성 ⇨ '신청일자'. '정원/현원', '평가년도/기수', '평가 시 부여받은 아이디' 내용 확인 ⇨ ⑥ [신청]버튼 클릭 ⇨ ⑦ 확인

※ ⑤ 문항들은 ④[기본정보생성] 클릭 시 자동 생성 되는 항목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수정할 수 없음

3. 공공형 신규 신청 확인

신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공공형선정] 메뉴에서 신청 상태 확인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정보 ① [신청상태]에서 '신청'여부 확인 ⇨ ② [신규신청일자]에서 '신청일자' 확인

2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신청

1. 공공형어린이집관리 접속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① 어린이집운영 ⇨ ② 공공형어린이집관리 ⇨ 공공형 선정관리 클릭

2. 재선정신청서(또는 포기신청서) 제출

① [공공형 선정관리] ⇨ ② [재선정(신청/포기)] 클릭 ⇨ ③ [공공형 재선정신청 및 포기신청] 팝업창 ⇨ ④ [양식다운로드] 클릭, 다운 받은 파일 양식에 맞게 신청서(또는 포기신청서) 작성 후 PC에 저장 ⇨ ⑤ [재선정 신청] 또는 [포기 신청] 선택 ⇨ ⑥ [첨부] 클릭 후 [재선정신청서] 또는 [포기신청서] 파일 업로드 ⇨ ⑦ [파일등록] ⇨ ⑧ 첨부파일 확인 후(삭제 가능) [신청] 클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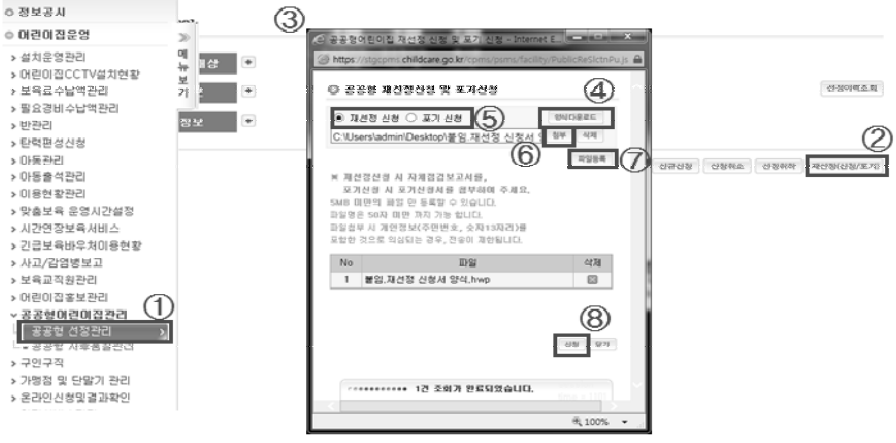

3. 재선정 신청 또는 포기 신청 확인

① [공공형 선정관리] ⇨ ②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정보] 클릭 ⇨ ③ 재신청 시 [신청상태] '신청' 확인 ⇨ ④ 포기 신청 시 [재선정포기일자] 확인

○ 최종 공공형 포기 이후 포기 신청 날짜로부터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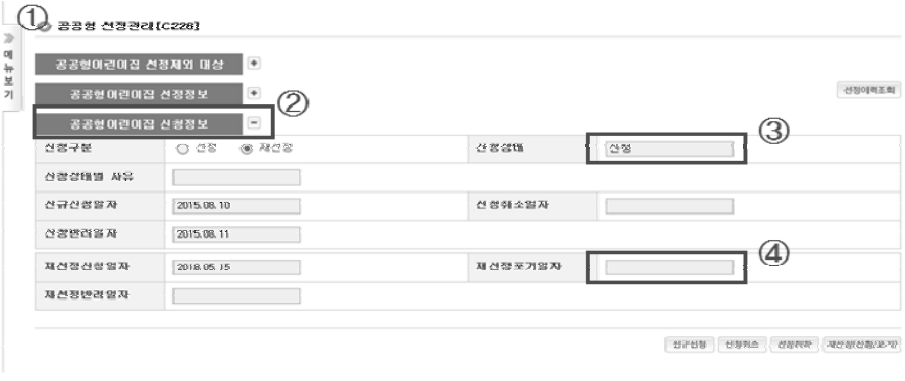

부록 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사용매뉴얼 (공무원용)

1 공공형운영비 생성 및 승인 방법

「행정지원시스템 〉 보조금 〉 지급승인 〉 공공형운영비(신) 탭 선택

① 운영비 생성을 원하는 어린이집 선택(☑)

② '공공형운영비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운영비 생성

③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승인버튼 클릭하여 승인처리

2 공공형운영비(신) 생성내역 수정 방법

① 수정을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값 변경

② 값을 변경한 어린이집을 선택(☑)후, 저장버튼 클릭하여 수정완료

2020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2020년 4월 인쇄
2020년 4월 발행

발행인 보건복지부장관

발행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공공보육 TF)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비매품〉

본 간행물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